

민간자격 7종목 자격관리·운영규정

우리함께 평생교육·나눔센터 · 경인시디지털교육자격협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우리함께평생교육·나눔센터에서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의 검정, 교육과정, 자격증 발급, 자격관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규정은 본 센터에서 운영하는 7개 민간자격 종목에 적용한다.

제3조(자격의 성격) 본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등록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며,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자격관리기관 및 연락처

항목	내용
관리·운영기관	우리함께평생교육·나눔센터
상위 소속기관	사단법인 예수교장로회 경인교회 부설 경인장애인선교회
대표자	김재완
소재지	경기도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41, 213호
전화번호	010-7708-7006 / 010-9867-3121
이메일	admin@a365.or.kr
홈페이지	a365center.or.kr

제4조(운영참여자) 신청일 현재 본 자격의 관리·운영 상시 참여자는 대표자 김재완 1인으로 하며, 대표자는 민간자격 등록신청, 교육과정 운영, 검정관리, 자격증 발급 및 사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필요 시 출제위원, 채점위원, 시험감독위원, 교육강사 등 외부 전문인력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자격종목 및 직무내용

번호	자격명	등급	직무내용
1	디지털생활AI교육지도사	2급/1급/강사	일반 시민, 디지털 취약계층, 초보 학습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인터넷, 생활민원, 문서작성, 생성형 AI 기초 활용법을 교육·지도한다.
2	챗봇활용교육지도사	2급/1급/강사	생성형 AI 챗봇의 기본 원리, 질문 작성법, 문서작성, 정보정리, 교육·상담·홍보 분야 활용법을 교육·지도한다.

3	시니어시디지털지도사	2급/1급/강사	고령층 학습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초, 생활 앱, 보이스피싱 예방, 키오스크, AI 챗봇 기초 사용법을 눈높이에 맞게 교육·지도한다.
4	AI공연예술콘텐츠지도사	2급/1급/강사	공연예술 분야의 기획, 홍보, 교육자료 제작, 공연 기록물 정리, 영상콘텐츠 제작 등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도록 교육·지도한다.
5	AI무용콘텐츠지도사	2급/1급/강사	무용 전공자 및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무용 콘텐츠 기획, 촬영, 편집, 홍보, 교육자료 제작에 AI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지도한다.
6	AI전통무용콘텐츠지도사	2급/1급/강사	한국무용, 고전무용, 전통예술 분야의 기록, 보존, 교육, 홍보 콘텐츠 제작에 AI를 활용하도록 교육·지도한다.
7	AI무용영상제작지도사	2급/1급/강사	무용 공연, 연습, 교육 장면을 영상으로 기획·촬영·편집하고 AI 도구를 활용하여 쇼츠, 홍보영상, 교육영상을 제작하도록 교육·지도한다.

제5조(등급 수준) 2급은 기초 활용 및 보조지도 수준, 1급은 심화 활용 및 독립 교육 운영 수준, 강사는 교육과정 설계·강의·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강사 수준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및 검정기준

제6조(교육과정) 각 자격의 교육과정은 자격별 직무내용에 맞추어 이론, 실습, 과제, 윤리·저작권·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기본 교육시간은 총 2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검정방법) 검정은 필기, 실기 또는 과제평가, 출석 기준을 종합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8조(합격기준) 총점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실기 또는 과제평가가 40점 미만인 경우 총점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출석기준) 교육과정 이수자는 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응시자 확인 및 자격증 발급

제10조(본인확인) 시험감독 또는 관리자는 수험표, 신분증, 신청정보 등을 대조하여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제11조(자격증 발급) 관리기관은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며, 자격증에는 자격명, 등급, 성명, 생년월일 또는 자격번호, 발급일, 등록 민간자격 표시, 관리기관명, 대표자명, 자격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제12조(유효기간) 자격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보수교육 또는 갱신절차를 이수한 경우 갱신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대표자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신청기관의 내부규정, 운영위원회 결의 및 자격관리 일반원칙에 따른다.

※ 본 자격 7종은 2026년 6월 1일 「자격기본법」 등록 신청 예정이며, 등록 완료 전까지 '준비 중' 상태로 안내합니다.